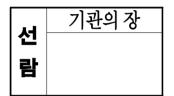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10호

www.namwon.go.kr

제10호 2024. 2. 19(월)

공 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69호「숙련기능일력 확대방안(k-pointE74)지자체 추천권 신설에 따른 숙련 기능인력(E-7-4)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보

| 회 | | | | | |
|---|--|--|--|--|--|
| 람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69호

시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E74)」 지자체 추천권 신설에 따른 = 숙련기능인력(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와 관련하여, 우리 도 숙련기능인력 추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 개요

- (모집대상) 숙련기능인력(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지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모집인원) 160명 (모집기간) <u>'24. 2. 19.(월) ~ 인원 마감시</u>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
 -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능(leeje@jbba.kr, lkh2555@jbba.kr, hj97@jbba.kr)
- (결과통보)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문자 통보
-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서류 확인 후 결과 통보**
- (업무흐름)



2 자격 요건

제10호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 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 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 으로 완화하여 적용)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 지자체 추천(30점)을 통해 200점을 득점자 포함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시

- ① (<u>가점 항목</u>)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현 근무처 근속) 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u>현재 근무처에서</u>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 (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 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이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1334는 최근 10년 이내 시형만 해당)

-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시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다.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2. 추가요건

가. E-7-4 체류자격 전환 이후,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단,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 가능

3.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가. 체류자격: E-7-4(숙련기능인력)

나.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3 「K-point E74」 점수표

시

| 구 분 | | | LH - | | | | | |
|------------------------|---|--------------|-----------------------|----------|--------------|--|--|--|
| TE | _ | | 9, E-10, H-2) | 으로 4년 이 | 상 체류한 현재 국내 | | | |
|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④평균소득 및 ⑧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 | | | | | | | |
| 제외대상 |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 | | | | |
| | く 기본항목 | > | | | | | | |
| | (A) 평균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 | 군소득) : 최대 12 0 |)점 | | | | |
| | 구 분 | 2,500만원 이성 | y* 3,500만· | 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 |
| | 배 점 | 50 | 80 | | 120 | | | |
| | * 농·축산업, 어 | 업·내항상선 종사자 | 가는 연봉 2,400만· | 원 이상 | | | | |
| | ® 한국어능력 | 역 : 최대 120점 | | | | | | |
| | 구 분 | 2급/2단계/41~6 | 0점 3급/3단계/ | 61~80점 4 | 급/4단계/81점 이상 | | | |
| | 배점_ | 50 | 80 | | 120 | | | |
| |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 | | | | | |
| | © 나이 : 최대 60점 | | | | | | | |
| | 구분 | | 27세 ~ 33세 | | | | | |
| 점수표 | 배 점 | 40 | 60 | 30 | 10 | | | |
| | / 가전 \ | | | | | | | |

| | (기 | 점 > | | | | | |
|---|----------|--------------|-----------|-------------|---------------------|--------|-------|
| | | 추천 | _ | 3 | 4 | 5 | 6 |
| | | 1) | 2 | 현근무처 | 인구감소지역 | 자격증 또는 | 국내 |
| | 중앙 부처 | │ 광역 │지자체 | 고용 기업체 | 3년 이상 근속 |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국내 학위 | 운전면허증 |
| | T-/\ | 717171 | 71日~ | | 9E 10 E1 | | |
|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 1 | | <u> </u> | | | | | |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지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mark> 〈 감점 〉</mark> | | | |
|--|----|----|----------------|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시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15점) | 5 | 10 | 15 |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시

4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 비 고 | 부수 | | |
|----|--|--|---|-----------------------|--|--|
| 1 | 신청 관련 서류 | - 점수제 자체 심/ | | 1부 <붙임참고> | | |
| 2 | 본인 확인서류 | - 외국인등록증 또 | 는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 1부 (본인) 1부 | | |
| 3 | 소득확인서류 | - 세무서 발급 소득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 | | |
| 4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 - 외국인근로자 경 |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 | | |
| 5 | 표준근로계약서 | - 고용계약서(E-7-4) | (견본 참고) <붙임6> | 1부 (기업) | | |
| 6 | 고용기업 관련서류 | - 신원보증서<붙임 - 4대 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사업장 2 | - 고용기업 추천서(현재 1년 이상 근무 기업)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암/> - 신원보증서<붙임 8>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 | |
| 7 | 업종입증서류 | <해당 업종에 따 | * | ㅏ인 후 인정 1부 (기업) | | |
| 8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산업새해보상보임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0 | 1부 (topik.go.kr) 1부 (사회통합 정보망) | | | |
| 9 | 가점관련서류 | - 인구감소지역 또는 - 기능사 이상 자격 - 국내 운전면허증(|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 면허증) 나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 1부 | | |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 기준에 따름.

5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 (결과 안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별도 문서로 발급하지 않음(추천 명단은 도→법무부에 공문 제출)
- (서류 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 효력) 지자체 추천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 효력 소멸)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시군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연락처(제도 안내)

| 연번 |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
| 1 | 전북특별자치도 | 대외협력과 | 063-280-2082 | |
| 2 | 전주시 | 기업지원과 | 063-281-2353 | |
| 3 | 군산시 | 인구대응담당관 | 063-454-2632 | |
| 4 | 익산시 | 여성가족과 | 063-850-8300 | |
| 5 | 정읍시 | 일자리정책과 | 063-539-8112 | |
| 6 | 남원시 | 행정지원과 | 063-620-6066 | |
| 7 | 김제시 | 투자유치과 | 063-540-3980 | |
| 8 | 완주군 | 행정지원과 | 063-290-2257 | |
| 9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063-430-8058 | |
| 10 | 무주군 | 산업경제과 | 063-320-2351 | |
| 11 | 장수군 | 민생경제과 | 063-350-2191 | |
| 12 | 임실군 | 다문화교류과 | 063-640-4653 | |
| 13 | 순창군 | 경제교통과 | 063-650-1324 | |
| 14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1 | |
| 15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063-580-4237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연락처(서류 접수 기관)

| 연번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 1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063-280-1011~1013 | |

물임1 전북특별자치도 E-7-4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보

| | | | .1-1 -1 1 | 3/ 1) | | | |
|---|-----------------|-------------|------------|--------------------|--------------------|------------|-----------|
| | 외국 | 인 숙련기능 | 등인력 점수 | 제(E-7-4) ㅂ | 비자주천 | 발급신정기 | ধ |
| | 서퍼/어ㅁ) | | | 국적 | | | |
| 외 | 성명(영문) | | | 성별 |] | | |
| 국 | 등록번호 | | | 연령 | } | | |
| 인 | 주소 | | | 연락 | 처 | | |
| 정 | 이메일 | | | 비자유 | -형 | E-9 🗌 E-10 |) 🗌 H-2 🗌 |
| 보 | 추천 대상 | 근무 업체 | | | 근무 시 | 군 | |
| | (해당시 체크) | 근속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4년 이상 □ |
| 고 | 업체명 | | | 사업기 | | | |
| 용 | 변세경 | | | 등록번 | 호 | | |
| 업 | 업체주소 | | | · | · | | |
| 체 | 대표자성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
| 1 | 위 외국인 근퇴 | 문자의 체류자 | ·격 변경(E-9/ | E-10/H-2→ I | E -7-4)을 유 | 위해 전북특별 | 별자치도의 고용 |
| | 추천서 발급을 | | , | | , i | | |
| | 구선시 <u>발급</u> 宣 | 건성합니다. | 존한근 귀 엔 | 성에 따른 합 | 十 一 口 子 | 선선아역 1기 | 1인/정보보오립] |
| | 제15조~제18조 | :에 따른 개인 |]정보의 조회 | 및 활용에 등 | 동의합니다 | ŀ . | |
| | | | | | | | |

- ②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임을 확인하며, 위의 2년 거주 요건 사실을 숙지하시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③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 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법무부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

◇ 업체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붙임2] 통합신청서 2.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붙임4] 신상 기술서
- 4. [붙임5] 출입국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 5. [붙임6] 고용계약서(E-7-4)
- 6. [붙임7] 고용기업 추천 양식 7. [붙임8] 신원보증서 8.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 9.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10.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11. 고용기업 업종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1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14.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체납여부 확인용) 1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6.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하이코리아 제출한 사본제출가능)

첨

서

류

붙임2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 | <u> </u> | PORT | | | | | |
|---|---|---------------------------|---|-----------------------|------------|------------------------|-----------------------------|
| [] 외국인 등록 | [] 체류자격 | 외 활동허가 | (희망 자격 : | :) | | | |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IN ACTIVITIEN / Status to | S NOT COVERE apply for (| ED BY THE ST | TATUS OF | | HOTO <u></u> (35mm×45mm)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 | | | 개월이 지나지 않아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기 REENTRY | | `) NGLE, MULTIP | LE) | | 야 함 | ast 6 months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자격:) | [] 체류지 변 | | , | | | | 및 등록증 재발급 |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ALTERATI | ION OF RES | IDENCE | | | 시에만 사진 Photo onl | 부착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자격:) | [] 등록사항 | | | | | Resident (Reissued) | Registration |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 | | | (Helasueu) | | |
| 성명 성 Surnai | me | | 명 Given i | names | | | |
| Name In Full | | | | | | | |
| 생년월일 <u>년 yyyy</u> Date of Birth | 월 mm | 일 dd | 성 별 Sex | []남 M []여 F | | 국적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Nationality | |
| 여권번호 | 여권 빌 | | | | | 유효기간 | |
| Passport No. | Passport Issue Passport Date | | | t Expiry Date | |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 | | |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휴 | 대전화 Cell | phone No. | | | |
| 본국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Address In Home Country | | | | | | Phone No. | |
| | [], 쥙], | | 학교 이름 | - 1 | | 전화번호 | |
| 재학 여부 Non-school[], Elementary School Status 학교 종류 | [], Middle[], F | ign[] Nar | | ^이 인가[], | | Phone No. 국청 비인가, 대 | lorgran [] |
| Type of School | Accredite | ed school b | | | | ited, Alternative | |
| 원 근무처 | _ | 사업자등 | | | | 전화번호 | |
|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E | | gistration No. | | | Phone No. | |
| Workplace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F | 사업자등 Rusiness Rec | 등독번호 gistration No. | | | 전화번호 Phone No. |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 | sand won) | | | 업 Occupation |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 전자우편 | | | | |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 재) | 국인등록증 재팀 | | | | | | |
|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 | or Foreign Re | sident Re | gistration | | |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 청인 서명 gnature/Seal | 명 또는 | = 인 | !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 「출입국관리법 시행 Please refer to Annex 5-2 of t | 규칙」 별표 59 o the attach | 의2의 체류자격별 · ned documents | for each | status of | stay and each | application type in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 person. | 1104 FE | 느 이 시원이어 베 | OTI | UIDI EE O | 시천이이 보 ㄸ느 ㅁ | Aled EE L O |
|------------------|----------------|-----------------------|------------------|----------------|----------------------------|---------------|
| 신청인 | 서명 또 | |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 Signature | e/Seal Shouse of anot | icant | Signature/Seal | Father Mother of applicant | Signature/Sea |
| | | 공 용 | 용 란 (For Officia | l Use Only) | | |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 |
| -1-1/Al-1\ Al-5L | =171/417) 0171 | | 귀기비를 | | 체류자격 |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 허가번호 | | 체류기간 | |
| 74 11 | 담 당 | | | | 청 | 장•소장 |
| 결 재 | | | | | 가 / 부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가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하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K-point E74 | 점수제 | 자체 | 심사표 |
|----------------------|--|-------------------|---------------|---------------------------|
| 영 명 성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
| 회사명 | | 국 적 | | |
| 111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 | | 로 4년 이상 | ·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
| 기 본 요건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 6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 | | 업, 어업·내힝 | }상선: 2500만원) 이상 으로 |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7 | 기업의 추천 을 받 | <u></u> 맛음() | |
| 점수 요건 |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 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 (총점 (기본항목+가점항목) ○ | 소득 50점, 형 | 한국어 50점 | |

| | | 구 분 | 점수 | 제출 서류 |
|--------|-----------------------|------------------------|----|-------|
| 7] | ①최급 | 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 뵨 | ② 한= | 국어 능력 | | |
| 항 | ③ 나여 | | | |
| 목 | | 소 계 | | |
| | | ① 중앙부처 추천 | | |
| | 추천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 가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 점 | ④ 현 | 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 항 | ⑤ 안 | 감소지역 또는 유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 목 | (6) 7) - | 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 | ⑦ 국· | 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 | | 소 계 | | |
| 감 | ① 벌 | 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 점 항 | 2 3 | 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 목 | 3 출 | 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 | |
| | | 총 점 | | |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 | O | Л |
|---|---|---|
| 臣 | | 4 |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 | | | | | | |
|------------------------|-----|-------------|---------------|-----|----------------------|--|--|
| 영문 성명 |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 | |
| 국 적 | | | 전화 번호 | | | | |
| 최종학력 | □고졸 | □학사 □석사 □박사 | 최종학교명 | | | | |
| 결혼 여부 | | 결혼 □미혼 | 결혼 일자 | | | | |
|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1 | 류 여부 류 포함) | | |
| | 배우자 | | | □있음 | □없음 | | |
| 가족 관계 | 자녀1 | | | □있음 | □없음 | | |
| 7 -1 12/11 | 자녀2 | | | □있음 | □없음 | | |
| | 자녀3 | | | □있음 | □없음 | | |
| | 자녀4 | | | □있음 | □없음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24. . . 작성자: (서명)

시

붙임5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 | | | |
|--|--|--|--|--|
|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 | | | |
| 2. 외국인 등록번호: | | | | |
| 3. 고용기업명: | | | | |
| 4. 고용기업 대표명: | | | | |
|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에 있어 추후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형사범 □ - 세금체납자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 없음 □ 1~3회 □ 4회 이상 □ - 불법체류 이력 :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 | | | |
|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 |
|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제10호

붙임6 고용계약서(E-7-4용) 견본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 아래 당사기 The followin | 자는 ng pa |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ł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 |
|--|-------------|---|--|--|--|--|
| | | 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 |
| 사용자 | 소지 | 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 | |
| Employer | 성명 |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 |
| 근로자 | 성명 |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 |
| Employee | 본코 | 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 | |
| 1. 근로계약 | 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E-7-4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 일 ! 이상 되어야 함 | | | |
| 1. Term o Labor contrac | | - (YY/MM/DD) to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 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 | | |
| 2. 근로장소 | <u> </u>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어 | 세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 |
|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 | | | | | | |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 | |
| - Industry: 3. Description of work - Job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 | | ne employee must be stated | | | |
| 시 분 ~ 시 분 4. 근로시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 | | | | |
| hours (changeable - shift system (| | 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uncil -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 | | | |
| 5. 휴게시긴 | <u>'</u> - | 1일 분 | | | | |
| 5. Recess ho | ours | () minutes per day | | | | |
| 6. 휴일 | | []일요일 []공휴일([]유급 []무급)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7 | | | | |
| 6. Holiday | S | []Sunday []Legal holiday([]Paid []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 | | | | |

| | | (뒤쪽) |
|--------------------------------------|--|---|
| 7. 임금 | - 고성석 수당: (수당 : - 상여금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 ※(E-7-4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원 원), (수당: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원 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 해당되지 않음) |
| 7. Payment | - Basic pay[(Monthly, hourly, da - Fixed benefits: (benefits - Bonus: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c |)won, 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illy, weekly) wage] ()won :)won, (benefits:)won)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l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 8. 임금지급일 |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 .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 8. Payment date | | nonth or every (day) of the week. If the ,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
|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 | 등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By direct de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 | 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 10. 숙식제공 |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역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미 |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박: 매월 원]중식, []석식) []미제공 1월 원 |
| | ※ 근로사의 비용 무남 수준은 사용사의 | 사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flats, []Lodging facilities(such]Container boxes, []SIP p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r 2) Provision of meals | es: []Detached houses, []Goshiwans, []Studio —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anel constructions, []Rooms within the business ag or boarding facilities) hployee: won/month []]]]]] Not provided |
| | * The amount of costs paid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 |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ver and employee |
| 11. 사용자와 근로 | 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 | 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 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fulfill them in good faith. |
| 12. 이 계약에서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_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2. Other matters | 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 | 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 | | 년 월 일 (YY/MM/DD) |
| | 사용자: Employer: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근로자: Employee: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붙임7 고용기업 추천 양식

시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 | | | | | | |
|--|--------------|------|--------------|-----|---------|--------------------|----------------------|
| | 영문명 | | | | 외국인 | 등록번호 | |
| 외국인 | 국 적 | | | | 성 | 별 | |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면 | 년(00.00.0 | 0.~ | - 00.00 | .00., 00 | 0.00.00.~ 00.00.00.) |
| | 업체명 | | | | 사업자 | 등록번호 | |
| , , , , 기 | 대표자 | | | | | ·로자 수 중인 숙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 추천자 | | | | | | 60 40 (E-7-4) 수 | |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반 | <u> </u> 호 : | | |) | |
| 위 외국인이 <u>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u> 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 (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 | | | | | |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 | | | |
| | 2024 년 월 일 | | | | | | |
| | 위 | 추천자 | 성명 | | | | 서명(인) |

| 브 | OIQ |
|---|------------|
| | 6 0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 시행규칙 | [별지 | 제129호서식] | |
|--------|------|-----|----------|--|
| | | | | |

신 원 보 증 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피보증 | |
|-----|--|
| 외국인 | |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남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남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신원보증인 근무처 직위 비고 근무처 주소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3.00.00.**(신청일기준)** ~ 27.00.00.**(최장 4년까지 가능)**

다. 보증내용

-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9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요청시 발급) ※ 추천자에게는 문자통보

【 발급번호 2024-000 】

숙 련 기 능 인 력 추 천 서

- 1. 외국인 성명(영문):
-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기업명 및 고용기업 대표명:
- 4. 사업자 등록번호:
- 5. 추천 가점: 30점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 본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